

난민법안 조항별 검토의견

조문	제정안	수정안	이유
제2조 (정의)	<p>2.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p>	<p>2.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p> <p>※ 대안: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협약의 규정보다 확대됨 ▪ 난민인정요건을 국제기준보다 확대하여 난민이 아닌 자들이 대량으로 인정될 우려 <p>영문: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불문: craignant avec raison</p>
	<p>4. “난민신청자”란 외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무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난민인정절차가 계속 중인 자</p> <p>나. 난민인정불허결정이나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결정을 받고 아직 이의신청 제기기간이나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자</p> <p>다. 난민인정불허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이거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p>	<p>4. “난민신청자”란 외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무국적자로 대한민국 안에서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후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p> <p>가. <삭제></p> <p>나. <삭제></p> <p>다.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에” 신청을 한다는 규정은 재외공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국외에서의 난민신청제도 운영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 ▪ 단지 취소소송 제기만으로 불인정 결정의 모든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행정부 결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법무부의 불인정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자 지위를 상실하고, 소송 제기 중인 자는 그 불인정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함 ▪ 3심 종료시 까지 장기간 소요·과도한 국가 재정 부담 ※ ‘10. 11월 현재 최종확정판결 기준 원고승소율은 13.7%(인용 28, 기각 177)임 ▪ 난민인정결정은 결국 대법원이 처분하는 것이 되어 법무부 처분의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
	<p>5. “재정착난민”이란 해외 난민 중 대한민국으로의 재정착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착난민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해외난민”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재정착난민 수용은 이민정책, 탈북자 수용문제, 국민 정서, 외국인사회통합 등과도 관계된 사안으로 정책적 판단이 필요

조문	제정안	수정안	이유
제5조 (난민인정의 신청)	⑤ 난민신청자는 「출입국관리법」 상의 체류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난민인정불허결정 후 이에 대한 행정쟁송이 제기된 경우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신청하기만 하면 소송종료시까지 체류할 수 있음. 특히 재신청을 허용할 경우 무한정 체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제6조 (공항·항만 에서의 난민인정의 신청)	<p>① 「출입국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입국심사 전에도 <u>공항·항만 또는 국경에서</u> 난민인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③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난민인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입국 및 임시체류를 허가하여야 하고 통상의 난민인정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p> <p>⑤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서의 난민인정절차는 본 조항의 시간적 및 장소적 제약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난민인정절차에 따른다.</p>	<p>① 「출입국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입국심사 전에도 <u>공항·항만에서</u> 난민인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③ <삭제></p> <p>⑤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에서의 “국경”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공항·항만에서의 신청으로 제한할 필요 공항·항만에서의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는 그 특성상 국경관리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난민인정절차 (fast track)를 운영할 필요 필요시 신원확인을 위해 구금 상태에서 신속하게 심사
제9조 (입증책임 및 입증정도)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난민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체계에 맞지 않고 명문규정으로 두게 되면 사법권 제약 법규정이 없더라도 판례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음
제16조 (서류 등의 열람·복사)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은 난민신청자의 열람·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u>지체없이</u>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은 난민신청자의 열람·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u>상당한 이유</u>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난민심사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체없이” 응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부담 예상 서류 등의 열람·복사권 보장을 위해서는 난민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질 높은 통역서비스 제공, 녹음·녹취시설 등 제반 여건이 우선 갖추어져야 할 것임

조문	제정안	수정안	이유
제21조 (보호 중인 외국인의 난민인정의 신청)	<p>①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의 신청 당시 이미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및 제63조에 따라 보호 중인 경우 그 보호기간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때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난민신청자의 보호를 해제하는 때에는 보증 등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p>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보호기간이 3개월 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현재도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정지신청, 취소소송 등 행정적·사법적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외국인 보호에 대한 법원의 허가제는 없음
제27조 (인도적 지위의 부여 절차)	<p>인도적 지위의 부여절차는 난민인정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난민인정의 신청과 인도적 지위 부여의 신청은 동시에 혹은 선택적으로 제출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의 신청만이 있는 경우에도 인도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부여할 수 있다.</p>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법상 '인도적 지위'는 신청자의 요청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난민 인정 요건 충족지 못한 자에 대해 인도적 고려로 체류를 허가해주는 것임 • UNHCR도 단일절차로 난민이나 '다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인도적 지위 등 포함)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제35조 (유엔난민기 구와의 교류 ·협력)	<p>① <u>법무부장관 및 위원회는 유엔 난민기구가 난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정보 및 통계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난민 등의 상황 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이행 상황 3. 난민 등에 관한 현행 법령과 행정규칙 및 장차 시행될 법령과 행정규칙 4. <u>난민인정 또는 이의절차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난민위원회에의 의견 제시</u> 	<p>① (현행과 같음)</p> <p>4. <삭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협약 (제35조 국가기관과 국제연합과의 협력)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
제44조 (난민의 가족결합 보장)	<p>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의 배우자 및 만 2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의 배우자 및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그 가족의 결합이 가능하도록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p>	<p>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의 배우자 및 만 20세 미만의 자녀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의 배우자 및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경우 그 가족의 결합이 가능하도록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결합의 원칙'은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유엔의 권고사항임

조문	제정안	수정안	이유
제46조 (귀화)	난민인정을 받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국적법」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귀화요건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볼 때 단기간이라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조기에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안정적 체류 및 지원을 도모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는 체류제도 개선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임
제48조 (생계비지원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를 지원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국가재정부담 등이 우려되므로 생계비 지원보다는 제한적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제51조 (교육권)	미성년인 난민신청자 및 난민신청자의 미성년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신청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 조항을 근거로 자녀의 교육권을 주장하는 불법체류자의 남용적인 난민신청 증가 우려

추가되어야 할 조항

조문	제정안	수정안	이유
제00조 (소송관할 특례)	<규정 없음>	①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서울고등법원의 난민소송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소송 1심 법원을 고등법원으로 하여 소송기간 단축 • (입법례) 특허소송은 2심제로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특허법 제186조)
제00조 (난민심사 신속절차 제도)	<규정 없음>	① 난민인정요건이 명백히 충족되지 않은 경우 신속절차로 심사할 수 있다. ② 다음의 경우 명백히 남용적인 신청이라 볼 수 있다. 1. 과거 다른 신원으로 난민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체류 만료에 임박해 체류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신청을 했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백히 남용적인 신청건은 별도의 절차로 처리 • (입법례) 독일은 경제적 사유로 난민신청한 자 등은 신속절차로 처리 (Asylum Procedure Act, Section 30)

법체계 관련 조항

조문	제정안	수정안	이유
제6조 (공항·항만에서의 난민인정의 신청)	②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4주 이내 난민인정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 머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난민인정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 머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함이 타당
제18조 (난민의 인정 등)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의 이유 및 이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한 난민 인정불허통지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난민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의 이유 및 이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한 난민 인정불허통지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형사·민사상 불복기간이 7일, 14일인 점에 비추어 30일은 지나치게 장기 ⇒ 현행 출입국법에 14일로 규정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난민인정 등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최초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하위법령에 규정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지는 공감하나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소송법에서도 기간이 훈시 규정인 경우가 많음 현재 인력 부족 등 실질적 여건상 기간명시에 대한 부담이 있음
제22조 (이의신청)	⑨ 제8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하위법령에 규정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지는 공감하나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소송법에서도 기간이 훈시 규정인 경우가 많음
제26조 (법적용례)	② 난민인정절차에 관하여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 적용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제3조 제2항제9호)과 충돌됨